

변경 대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 n o. | 펀드명 | 변동 성 값 업데 이트 | 세법 | 자본 시장 법 | 신용 평가 등급 | 종류 신설 | 운용 역 변경 | 결산 |
|---------|---------------------------------------|--------------------------|----|---------------|----------------|----------|---------------|----|
| 1 | 미래에셋Focus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 | - | - | - | - | ○ |
| 2 | 미래에셋개인연금로우볼인덱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 | - | - | - | - | - | ○ |
| 3 | 미래에셋글로벌멀티에셋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 | - | - | - | - | - | ○ |
| 4 | 미래에셋글로벌스마트리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 | - | - | - | - | - | ○ |
| 5 | 미래에셋글로벌인컴8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 | - | - | - | - | - | ○ |
| 6 |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 - | - | - | - | - | - | ○ |
| 7 |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 - | - | - | - | - | - | ○ |
| 8 | 미래에셋로우볼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 | - | - | - | - | ○ |
| 9 |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 ○ | - | - | - | - | ○ | ○ |
| 10 | 미래에셋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 | - | ○ | - | - | - | ○ |
| 11 |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분배형) | ○ | - | ○ | - | - | - | ○ |
| 12 | 미래에셋퇴직연금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 | ○ | - | - | - | ○ |
| 13 |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 | - | ○ | ○ | - | - | ○ |
| 14 | 미래에셋QV솔루션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 | ○ | ○ | ○ | C-P2 | - | - |
| 15 | 미래에셋QV솔루션5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 | ○ | ○ | ○ | C-P2 | - | - |
| 16 | 미래에셋QV솔루션70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 | ○ | ○ | ○ | C-P2 | - | - |
| 17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 | - | - | - | C-e | - | - |
| 18 |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 ○ | ○ | ○ | C-F | - | - |

2. 변경 사항:

- 1) 변동성 값 업데이트
- 2) 세법 개정사항 반영
- 3)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 4)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 시 처분 등 관련 사항 반영
- 5) 종류 신설
- 6) 투자신탁 운용역 변경
- 7)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3. 효력발생일: 2016년 09월 08일(목)

4. 변경 내용:

1) 변동성 값 업데이트

| 펀드명 | 변경 전(%)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 변경 후 등급 |
|---------------------------------------|---------|---------------|----------|----------|
| 미래에셋Focus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12.13% | 14.52% | 3 | 3 |
| 미래에셋로우볼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10.39% | 2 | 3 |
|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 10.57% | 12.11% | 3 | 3 |
|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분배형) | 2.05% | 1.71% | 5 | 5 |

2) 세법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부. 14.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p>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집합 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u>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는 분배를 유보합니다.</u></p> | <p>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집합 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u>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u></p> <p>※ 2016년 09월 08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p> |

| | | |
|--|----------|---|
| | ②~③ (생략) | <p><u>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 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 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u></p> <p>②~③ (현행과 동일)</p> |
|--|----------|---|

<집합투자규약>

|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
| 제33조(이익분배) | <p>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u>다만, 법 제 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u></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p> <p><u><신설></u></p> | <p>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p> <p><u>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u> 2. <u>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매매이익</u> |

3)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
| <p>제2부. 8.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예외)>¹</p> |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
| <p>제2부. 8.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²</p> | <p>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 <p>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p> |

¹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²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 | | |
|--|--|--|
| | <p>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 <p>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
| <p>제5부. 1. 가. 집합투자자 총회 등 / (3) 집합투자자총회 결의 사항</p> | <p><신설></p> | <p><u>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u></p> |
| <p>제5부. 3. 가. 정기보고서 / (2)자산운용보고서</p> | <p>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u>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u>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p> | <p>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u>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제1호의 방법</u>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p> |
| <p>제5부. 3. 나. 수시공시 /</p> | <p><신설></p> | <p><u>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u></p> |

| | | |
|---|--|--|
| (1)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 | <u>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u> |
| 제5부. 3. 나. 수시공시 / (2)수시공시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u>단순한 자구수정 등</u>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u>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u> |
| 제5부. 3. 나. 수시공시 / (3)집합투자 재산의 의결 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u>주주총회일부터 5일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등을</u> 공시할 것 |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u>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u> 공시할 것 |

<집합투자규약>

|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
|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 한) ³ | 2.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u>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u>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 2.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u>기업어음증권</u>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 |

³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 | | |
|--|--|--|
| | <p>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⁴,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 <p>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
| <p>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⁵</p> | <p>4.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라 (생략)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p> | <p>4.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p> |

⁴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만 해당됨.

⁵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 | | |
|--------------------------------|---|---|
| | <p>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 <p>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
| <p>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p> | <p>① ~ ③ (생략) 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p>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p>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p> | <p>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 <p>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p>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p> | <p>① ~ ⑥ (생략)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p> | <p>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p> |

| | | |
|--|--|--|
| | <p><u>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u></p> | <p><u>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u></p> |
|--|--|--|

4)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 시 처분 등 관련 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p>제2부.8.가. 투자대상 <채권>⁶</p> | <p>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p> | <p>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p> |
| <p>제2부.8.가. 투자대상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⁷</p> | <p>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p> | <p>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p> |

⁶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⁷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 | | |
|--|--|--|
| | <p>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p> | <p>(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p> |
|--|--|--|

<집합투자규약>

|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
| <p>제17조(투자 대상자산 등)⁸</p> | <p>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p> <p>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p> | <p>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p> <p>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p> |
| <p>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⁹</p> | <p><신설></p> | <p>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p> |

⁸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⁹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 | | |
|--|--|--|
| | | <p><u>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u></p> |
|--|--|--|

5) 종류 신설

<투자설명서>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종류형 구조] <신설> |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2) 가입자격 <신설> | (2) 가입자격 <u><미래에셋QV솔루션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u> <u><미래에셋QV솔루션5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u> <u><미래에셋QV솔루션70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u> <종류 C-P2> [아래 참조1] <u><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채권)></u> <종류 C-e> [아래 참조1] <u><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u> <종류 C-F> [아래 참조1] |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 (8) 환매수수료 <신설> | (8) 환매수수료 <u><미래에셋QV솔루션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u> <u><미래에셋QV솔루션5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u> <u><미래에셋QV솔루션70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u> <종류 C-P2> [아래 참조1] |

| | | |
|--|------|---|
| | | <p><u><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채권)></u> <종류 C-e> [아래 참조1]</p> <p><u><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u> <종류 C-F> [아래 참조1]</p> |
| <p>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 <신설> | <p><u><미래에셋QV솔루션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u> <u><미래에셋QV솔루션5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u> <u><미래에셋QV솔루션70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u> <종류 C-P2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 1, 2]</p> <p><u><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채권)></u> <종류 C-e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 1, 2]</p> <p><u><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u> <종류 C-F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 1, 2]</p> |

<집합투자규약>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신설> | <p><u><미래에셋QV솔루션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u> <u><미래에셋QV솔루션5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u> <u><미래에셋QV솔루션70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u> 종류 C-P2 [아래 참조1]</p> |

| | | |
|----------------------------|-------------------|--|
| | | <p><u><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채권)></u> 종류 C-e [아래 참조1]</p> <p><u><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u> 종류 C-F [아래 참조1]</p> |
|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p> | <p><신설></p> | <p><u><미래에셋QV솔루션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u> <u><미래에셋QV솔루션5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u> <u><미래에셋QV솔루션70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u> 종류 C-P2 수익증권</p> <p><u><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채권)></u> 종류 C-e 수익증권</p> <p><u><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u> 종류 C-F 수익증권</p> |
| <p>제39조(보수)</p> | <p><신설></p> | <p><u><미래에셋QV솔루션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u> <u><미래에셋QV솔루션5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u> <u><미래에셋QV솔루션70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u> 종류 C-P2 [아래 참조2]</p> <p><u><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채권)></u> 종류 C-e [아래 참조2]</p> <p><u><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u></p> |

| | | |
|-------------|------|---|
| | | <u>식)></u> 종류 C-F [아래 참조2] |
| 제41조(환매수수료) | <신설> | <u><미래에셋QV솔루션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u> <u><미래에셋QV솔루션5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u> <u><미래에셋QV솔루션70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u> 종류 C-P2 수익증권 [아래 참조1] |
| | | <u><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채권)></u> 종류 C-e 수익증권 [아래 참조1] |
| | | <u><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u> 종류 C-F 수익증권 [아래 참조1] |

[참조 1] 가입자격

<미래에셋QV솔루션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QV솔루션5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QV솔루션70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구분 | 가입자격 |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
| 종류C-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 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구분 | 가입자격 |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
| 종류C-e | 온라인 투자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구분 | 가입자격 |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
| 종류C-F |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 |
|--|--|--|--|

[참조 2] 보수표(%)

<미래에셋QV솔루션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
| 종류C-P2 | 0.30 | 0.50 | 0.03 | 0.02 |

<미래에셋QV솔루션5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
| 종류C-P2 | 0.35 | 0.56 | 0.03 | 0.02 |

<미래에셋QV솔루션70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
| 종류C-P2 | 0.40 | 0.60 | 0.03 | 0.02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
| 종류C-e | 0.30 | 0.42 | 0.04 | 0.02 |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
| 종류C-F | 0.50 | 0 | 0.06 | 0.02 |

6) 투자신탁 운용역 변경

| 펀드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 김철민 | 김명준 |

미래에셋자산운용(주)